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: 흥국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17.07.1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 2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재산상 이익제공 절차 관련 내부통제 미흡

○ 흥국증권㈜은 소속 임직원이 고객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·승인을 생략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업무 관행을 이유로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상 이익 제공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등 내부통제가 소홀할 소지가 있었으므로

앞으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기록 유지 및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,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,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평가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·운영하는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2) 물품구입·용역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 보완

○ 흥국증권㈜은 거래업체,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비교 절차 없이 계열사 등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는 바

수의계약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이를 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